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6 - 89호

창원시 간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간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11월 18일

창원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창원시 간병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간병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돌봄 영역임에도 경제적 여건에 따라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간병보조기구 지원 및 간병인 직무 교육 등 간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간병 환경을 조성하고 간병서비스

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6조)

라. 지원시설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전화:055-225-5375,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windhwan80@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 간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정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3

발의연월일 : 2026. 11. 18.

발 의 의 원 : 이정희・감규상・강창석・김원일・박강우 변보미・오춘근・전태완・정은미・차중현 홍용채 의원(11명)

1. 제안이유

○ 간병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돌봄 영역임에도 경제적 여건에 따라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간병보조기구 지원 및 간병인 직무 교육 등 간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간병 환경을 조성하고 간병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6조)

라. 지원시설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간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간병보조기구 지원 및 간병인 직무 교육 등 간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간병 환경 조성 및 간병서비스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병서비스”란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식사·배설·이동·위생관리 등의 기본적인 일상생활 활동을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행위로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간병보조기구”란 간병서비스를 보조하는 기구·장비 또는 소모품을 말한다.
3. “간병인”이란 창원시 관내에 소재한「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창원시 간병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간병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간병인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간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간병서비스 및 간병인 근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간병보조기구의 지원

2. 간병인 직무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간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등) ① 간병보조기구의 지원대상은 관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2.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에 지원된 간병보조기구의 이용대상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그 밖에 시장이 경제적 사정 등으로 간병보조기구의 사용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 각 호의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복수인 경우의 선정 기준과 제2항제3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방법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설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 시설에 간병보조기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간병보조기구의 지원 품목은 이동 보조기구, 욕창 예방 기구, 위생 보조기구, 그 밖에 간병서비스 보조에 필요한 기구・장비・소모품으로 하며, 동일 시설에 대한 지원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 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시설의 의무) ① 제6조에 따라 간병보조기구를 지원받은 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은 간병보조기구를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관리해야 하며,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원시설은 간병보조기구의 사용 현황 및 관리 상황을 매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 방법・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업무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간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관계 법령**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삭제 <2009. 1. 30.>

⑤ 삭제 <2009. 1. 30.>

⑥ 삭제 <2009. 1. 30.>

⑦ 삭제 <2009. 1. 30.>

⑧ 삭제 <2009. 1. 30.>

■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삭제

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0.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의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